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86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한지아·고동진·박성훈

김 건・안상훈・임이자

김소희 · 서범수 · 정성국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금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 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렇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 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감소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료·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또한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 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안 제3조)
- 나. 보충연금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부여(안 제10조)
- 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안 제11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보충연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추가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충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충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하며, 그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각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적사항에 관한"을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 3.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제공
- 6.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9.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10.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1.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
	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u><신 설></u>	제8조의2(보충연금)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제
	5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
	급하는 외에 추가로 제2항에 따
	른 금액을 보충연금으로 지급할
	<u>수 있다.</u>
	② 보충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일
	정 비율로 하며, 그 비율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 </u>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③ • ④ (생 략)

-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 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u>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u>는 정보
 - <u>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u> <u>험정보</u>
 -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삭 제>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
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베11조(조사·질문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1.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
<u>정보</u>
<u><</u> 삭 제>

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 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 <삭 제> 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 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삭 제〉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 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 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 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신 설>

<신 설>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 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 3.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 · 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u>인적사항에 관한</u> 자료 또는 정보

<u>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u> <u>는 정보</u>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

 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
- 6.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한다)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8. 범죄경력 -----

__

<u><삭 제></u>

<삭 제>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 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 호법 | 에 따른 치료감호시 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 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 <삭 제>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 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 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 분 자료 또는 정보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 략)

<삭 제>

<삭<u>제></u>

<삭 제>

9.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 료 또는 정보

10.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 료 또는 정보

③ ~ ⑥ (현행과 같음)